

[용화체육공원 비공원시설 1BL 보완내용 및 의견]

구 분	내 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반영 시기
허가담당관 (보완)	[농지전용팀]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라 협의 요청된 용화동 132-39번지 외 22필지의 농지는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아산시 고시 제2022-109호, 2022.3.30.)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 처리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의 면적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	○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아산시고시제2022-285호, 2022.08.30.)를 득하여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완료함.	반영	사업승인 변경(1차)시
건축과 (보완)	[경관위원회 심의] 가. 아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면적 산출근거도 제출함.	반영	사업승인 변경(1차)시